#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26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한정애・황 희・조 국

민홍철 • 이학영 • 박지원

김교흥 • 민병덕 • 소병훈

조인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너무 짧고 최초 1일만 유급이어서 난임치료휴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3호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5호)의 의결을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로한다.

제7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 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시 제18조에 따라 피보 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출산전후휴가, 유산 산 ·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사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제18조 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1.·2. (생 략) <u><신 설></u>

#### ② · ③ (생 략)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출산휴가"로 본다.

②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
	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
	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
	다.
	<u>의·</u> ②·③ (혂행과 같음)
	②・③ (현광과 실름) 77조(준용) ①
<b>^</b> ]]	(17年(元号) ①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
	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② (현행과 같음)